

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일부개정(2010.1.1, 법률 제9927호)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(2010.2.8, 대통령령 제22024호)이 시행됨에 따라, 「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」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재난관련 평창군 실·과장만으로 구성하였으나,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(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)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. (안 제12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당초예산 1,050천원 반영

- 민간전문가 위원회 참석수당 : 70천원 × 3명 × 5회 = 1,050천원

다. 관계부처 협의 : 해당없음

라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마. 입법예고 : 2010. 10. 11 ~ 2010. 10. 31(20일간) 실시, 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</u></p> 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재난업무담당(팀장)이 된다.</p> <p>제12조(위원회의심의사항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운용계획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. 기금의 결산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	<p><u>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</u></p> <p>제11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·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